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정호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359

발의년월일 : 2019년 1월 30일
발 의 자 : 신정호 의원(1명)
찬 성 자 : 이상훈, 임만균, 고병국, 노식래, 이석주, 김인제, 김재형, 이경선, 정재웅, 박상구, 강대호, 문장길, 이호대, 김기덕, 우형찬, 이병도, 송명화, 홍성룡, 박순규, 봉양순, 이준형, 오중석, 경만선(23명)

1. 제안이유

○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공청회 개최, 공고·열람 등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

○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주민참여제도의 경우 그 형태가 사후적이고 형식적인데 그쳐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, 행정문서 위주의 계획정보 제공으로 주민들이 도시계획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

○ 이에 도시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조례 기본원칙에 주민참여 기회제공, 제도마련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선언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제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○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에 주민참여 기회제공, 계획입안 전 주민의견 수렴의무 등을 추가함(안 제2조제2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도시·군기본계획수립지침」, 「도시·군관리계획 수립지침」,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　　타 :

서울특별시 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의 전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, 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미리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획 수립 체계를 마련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) (생 략) <신 설>	제2조(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의 전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, 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미리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획 수립 체계를 마련한다.